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소방본부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4월 12일, 김홍구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홍구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 조례의 대상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 장례식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례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례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4.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남기호)

#### 가. 조례개정 목적

-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각종 재난현장과” 를 “소방공무원 등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를 “순직한 경우” 로,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 를 “경의” 로,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를 “장례집행에” 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정비함.
- 안 제2조는 제목에서 “(장례의 대상자)” 를 “(장례의 대상)”

으로 변경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소방활동 또는 소방업무 수행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으로 변경하며, 제5호에서는 장례의 대상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제공무원”도 장례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장례의 대상을 적정하게 정비함.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 등”으로, “소방관서장(葬)”을 “소방기관장(葬)”으로,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으로,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을 “소방기관장(葬)은 소방기관”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일관되고 적정하게 규정함.
- 안 제6조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애도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장례식의 원활하고 현실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개정함.
- 안 제7조는 제2항제4호 중 장례절차 진행에 관련된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을 “(빈소, 분향소, 영결식, 안장식 등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하여 장례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함.

- 안 제9조는 본문 중 “지원하여야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같은 조 식사비 제외에 대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도지사가 장례비용 전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적정하게 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금번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개정 후 관련 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장례의 대상을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하고 장례비 지급 등 장례 절차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순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와 애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참고 1

## 시·도별 조례 현황

소방본부

시·도	조례명	제·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5. 19. 개정 2023. 10. 4.	조례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8. 3. 개정 2019. 1. 9.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2. 21.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2. 12.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7. 1.	조례 규칙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제정 2019. 6. 28. 개정 2022. 12. 30.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제정 2016. 4. 20. 개정 2023. 3. 6.	조례 규칙
경기도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10. 11.	조례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제정 2020. 1. 1. 개정 2023. 4. 7.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6. 30.	조례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3. 11. 개정 2023. 12. 8.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2. 22.	조례 규칙
경상남도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0. 13.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2. 30.	조례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